

www.mifaff.go.kr

농 어 촌 정 비 법 령 집

2008. 3.

농림수산식품부

목 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장 총 칙</p> <p>제1조 목 적 / 20 제2조 정 의 / 20</p> <p>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p> <p>제3조 자원 조사 / 28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 29</p> <p>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p> <p>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 30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 30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31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33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 33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 34</p>	<p>제1장 총 칙</p> <p>제1조 목 적 / 20 제2조 농어촌의 범위 / 20 제3조 한계농지의 기준 / 27</p> <p>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p> <p>제4조 자원 조사의 대상 등 / 28</p> <p>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p> <p>제5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 30 제6조 예정지 조사 / 31 제7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31 제8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33 제9조 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정신청 등의 절차 / 35</p>	<p>제1조 목 적 / 20</p> <p>제2조 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 34</p>

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조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 36 제12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 37 제13조 농지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 39 제14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 39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40	제10조 그 밖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참가 자격자 / 37 제11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서류 / 37 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 40 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 41 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절차 및 방법 / 42 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대상 자격자 / 44 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절차 등 / 45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 47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 48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 48 제20조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 49 제21조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 49 제22조 매각대금의 관리와 사용 / 52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 34 제4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 42 제5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 43 제6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 45 제7조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 / 45 제8조 매립지등 일시사용자 선정 방법 등 / 50 제9조 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 52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53 제17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54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 57 제19조 농어촌용수계획 등 / 59	제23조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54 제24조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보호·관리 / 57 제25조 용수계획의 수립 등 / 59	제10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 54 제11조 용수계획의 내용 / 59

<p>제20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62</p> <p>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 64</p> <p>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 65</p> <p>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 70</p>	<p>제26조 농어촌용수구역 / 60</p> <p>제27조 용수계획의 시행 / 61</p> <p>제28조 조례의 제정 / 62</p> <p>제29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62</p> <p>제30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 등 / 64</p> <p>제31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 65</p> <p>제32조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 67</p>	<p>제12조 농어촌용수검사기관 / 65</p> <p>제13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신청서 / 65</p> <p>제14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 69</p> <p>제15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 70</p>
<p>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p>	<p>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p>	
<p>제24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 71</p> <p>제25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 71</p> <p>제26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 72</p> <p>제27조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 73</p> <p>제28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 74</p> <p>제29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75</p>	<p>제33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변경 / 73</p> <p>제34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 75</p>	<p>제16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등 / 75</p>

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79 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79 제32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80 제33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 82 제34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83 제35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 83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84 제37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 85 제3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85 제39조 기술지원 등 / 89	제35조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76 제36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 77 제3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78 제38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81 제39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82 제40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 82 제41조 마을정비구역 고시내용의 통보 / 83 제42조 철거 및 이전비용의 보상 / 85 제4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 86 제44조 분양가격의 결정 / 89 제45조 수익금의 관리와 재투자 / 89 제46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 90	제17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 87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제40조 환지계획 / 92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교환·분합 등 제47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환지 / 90	제18조 환지계획 / 92

제41조 환지계획의 인가 / 97	제48조 환지면적의 산정 / 95	제19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 95
제42조 환지 업무의 대행 / 100	제49조 실경작지의 확인 / 96	제20조 실경작지 확인 / 96
제43조 환지사의 자격 / 101	제50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 98	제21조 환지계획의 공고·고시 / 97
제44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 104	제51조 환지사 시험 / 101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 99
제45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 104	제52조 수수료 / 102	제23조 환지계획 인가통지 / 99
제4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 105	제53조 자격증의 발급 / 102	제24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 101
제4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 107		제25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 102
제48조 권리 변동의 신고 / 108		제26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 105
제49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 / 109	제54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 109	제27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등 / 106
		제28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 107
		제29조 권리변동의 신고 / 108
		제30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 110
		제31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 111
		제32조 창설환지의 관리·처분 / 112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0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 113 제51조 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 115 제52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 115 제53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 117 제54조 토지 가격의 평정 / 119 제55조 수혜자총회 / 120 제56조 환지심의위원회 / 122 제57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 124 제58조 교환·분합의 시행 / 125 제59조 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 127 제60조 교환·분합의 효과 / 128 제61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 129	제55조 청산금의 공탁 / 116 제56조 손실보상 / 119 제57조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 120 제58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 120 제59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 122 제60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123 제61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 124 제62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 125	제33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 112 제34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 113 제35조 증환지의 대상 등 / 114 제36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 117 제37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 121 제38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 124 제39조 교환·분합의 인가신청 / 125 제40조 교환·분합인가 / 126 제41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 / 127 제42조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127

<p>제62조 교환·분합의 청산금 등 / 129</p> <p>제63조 지료 등의 감액과 반환 또는 증액 청구 / 129</p> <p>제64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 130</p> <p>제65조 지역권의 효력 / 131</p> <p>제66조 지료 등의 청구기한 / 131</p>	<p>제6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131</p>	
<p>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p>	<p>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p>	
<p>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p>	<p>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p>	
<p>제67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132</p> <p>제68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 133</p>	<p>제64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 / 133</p> <p>제65조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 134</p> <p>제66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 135</p> <p>제67조 농림어업인 단체의 범위 / 136</p>	<p>제43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133</p> <p>제44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대상지역 / 133</p>
<p>제69조 관광농원의 개발 / 136</p> <p>제70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136</p> <p>제71조 선수금 / 137</p>	<p>제68조 선수금 / 137</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등 / 137 제73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 139 제74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 · 양수 / 142 제75조 지도 · 감독 등 / 142 제76조 지정 취소 등 / 143		제45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등 / 137 제4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 139 제47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 143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	
제77조 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방침 / 144 제78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 144		
제79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 145 제8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과 고시 / 147	제69조 예산의 지원 / 145 제7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 147 제71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 / 147	제48조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 145 제49조 한계농지의 조사 · 고시 등 / 145
제81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 / 148	제7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149	제50조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148
제8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 148		제5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 149

제83조 관련 규정의 준용 / 149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 150
제85조 투자와 선수금 / 150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 151

제3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87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 151
제8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152
제89조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 153
제9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153

제7장 보 칙

제91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155
제9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55
제93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 161
제94조 자금지원 / 162
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62

제73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보고 / 152

제7장 보 칙

제74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 153
제75조 주민의견 청취 생략 / 155
제76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시 신고가
의제되는 영업 / 160
제7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62

제5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
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 16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6조 토지 등의 수용 / 164		
제97조 마을 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 / 166		
제9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67	제7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67	제53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67
제99조 준공검사 / 170	제79조 준공검사 / 170	
제100조 조세의 감면 / 171		
제101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 171	제80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 171	제54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 등 / 172
제102조 허가 취소 등 / 172	제81조 허가 취소 등 / 174	제55조 허가취소등의 처분 / 174
제103조 청문 / 174		
제104조 보고와 검사 / 175		
제105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 175		제56조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 176
제106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 177		
제107조 다른 등기의 정지 / 177		
제108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 178		
제109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 179		
제110조 수리계 / 179	제82조 수리계의 경비징수 의뢰 등 / 180	제57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 179
제111조 벌칙 / 181		
제112조 양벌규정 / 182		
제113조 과태료 / 183	제8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83	제5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184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하천법) <법률 제8338호, 2007.4.6></p> <p>제1조 시행일 / 185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185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5 제17조 생략 / 185</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대통령령 제20579호, 2008. 1. 31></p> <p>제1조(시행일) / 185 제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 185 제3조(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에 관한 특례) / 185 제4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 186 제5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 186 제6조(농어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186 제7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 187 제8조(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 187 제9조(매립지등의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 187 제10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 187 제11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 188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188</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농림부령 제1583호, 2008. 2. 4></p> <p>제1조(시행일) / 185 제2조(한계농지 고시에 관한 적용례) / 185 제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에 관한 적용례) / 185 제4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 185 제5조(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 186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186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186</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법률 제8351호, 2007.4.11></p> <p>제1조 시행일 / 186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 186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186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87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187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187 제7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88 제8조 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88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 189</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p> <p>제1조 시행일 / 188</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 2008.3.3></p> <p>제1조 시행일 / 18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18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187</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0조 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89 제11조 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 조치 / 189 제1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190 제1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190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90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01</p> <p>부 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66호, 2007. 5. 17></p> <p>제1조 시행일 / 201 제2조 및 제3조 생 략 / 20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201 제5조 생 략 / 202</p> <p>부 칙 <법률 제8588호, 2007. 8. 3></p> <p>① 시행일 / 202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202</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18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 189</p>	

부 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 202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203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203

제9조 생략 / 203

부 칙 (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 204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204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204

제9조 생략 / 204

부 칙 (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 204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204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204

제9조 생략 / 204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 2. 29></p> <p>제1조 시행일 / 20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20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205 제7조 생략 / 207</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법률 제9008호, 2008. 3. 28></p> <p>① 시행일 / 208 ② 다른 법률의 폐지 / 208 ③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208</p>		

- 별표(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211
- 별지서식(시행규칙 관련) 219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정비법</p> <p>일부개정 2007. 4. 6 법률 제8338호 전부개정 2007. 4. 11 법률 제8351호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66호 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588호 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49호 일부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9호 일부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20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8호</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정비법 시행령</p> <p>전부개정 2008. 1. 31 대통령령 제20579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p> <p>전부개정 2008. 2. 4 농림부령 제1583호 일부개정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농어촌의 범위)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p> <p>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p> <p>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p> <p>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p> <p>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p> <p>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p> <p>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2. 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p>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담수호 등 호수와 늪 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 사업</p> <p>바.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데에 필요한 사업</p> <p>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溜池), 도로, 방조제, 둑(堤防)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p> <p>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p>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와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그 밖에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p> <p>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p> <p>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p> <p>라.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p> <p>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p> <p>바. 빈집의 정비</p> <p>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p>		

아.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차. 그 밖에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일 : 2009.1.1]

7의2.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일 : 2009.1.1]

7의3.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해당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p> <p>[시행일 : 2009.1.1]</p> <p>8. “환지(換地)”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9.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p> <p>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p>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10.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한계농지의 기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p> <p>제3조(자원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沿岸海面)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p> <p>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p> <p>제4조(자원 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7. 산지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 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3조제3항 중 연안해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 ③ 삭제 <2008.2.29>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p> <p>제5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作物) 3. 경제성 및 농촌경관 4.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 <p>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p> <p>제5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2. 토지이용계획 3. 대상 사업의 우선 순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

4. 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예정지 조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투자 소요액
3. 사업 시행의 효과
4.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7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8.3></p>	<p>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개요(수혜면적을 포함한다)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지예산서 4.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공사비를 포함한다) 5. 사업효율 분석 결과 6.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7. 그 밖에 제8조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보수와 준설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한다)과 같은 호 라목</p>	

제8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및 바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개요(수혜면적을 포함한다)
2. 세부설계도서
3. 사업비 수지예산서
4. 사업비 명세서(공사비를 포함한다)
5.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0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惠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2조(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개수·보수사업 2. 농로의 포장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보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보수사업 <p>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p>	<p>제9조(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정신청 등의 절차)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p>	<p>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p> <p>1.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자격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p> <p>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격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 수혜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시행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異議)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p> <p>④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정하여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되,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0조(그 밖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참가 자격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11조(사업 시행 인가 신청서류)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p> <p>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p> <p>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도지사</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서 2.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 결과 	

제13조(농지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제40조에 따라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 용수시설,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배수·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p> <p>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 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p> <p>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려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또는 일시사용으로 관리·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업농업인 등의 농업 경영 규모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해당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p>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p>	

1. 관리·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2. 관리·처분대상자 결정 방법
 3. 관리·처분 일정
 4. 관리·처분 수익금 추정액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와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출자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

자)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p> <p>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 지역에 있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p> <p>3. 해당 매립지등 조성 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p> <p>4. 지방자치단체</p> <p>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p> <p>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절차 및 방법) ①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대상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p>	<p>제4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p> <p>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한다. <개정 2008.2.29></p> <p>④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5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p> <p>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려는 토지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③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p>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대상 자격자)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p>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⑤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p>

	<p>자치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자</p> <p>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자</p> <p>5.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p> <p>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매각대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6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p> <p>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p>제7조(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 ① 영 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p>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매각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 납부를 원하면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p> <p>2. 제1호 외의 경우: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p> <p>③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p>

	<p>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① 사업시행자가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2. 제19조제2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p>
--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p>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p> <p>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 사업의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p> <p>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농촌공사에게 제19조제2호의 사업의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p> <p>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p> <p>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① 토지 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p>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
4.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2. 제19조 각 호의 사업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임대 또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직접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대상 자격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는 자에게 일시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p> <p>③ 일시사용자 선정방법, 일시사용료 산정 기준·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8조(매립지등 일시사용자 선정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사용 신청인이 1명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에 고려하여 선정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사용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하여 선정.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이고, 매립지등을 경작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도지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산정 기준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④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p> <p>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p> <p>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p> <p>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p> <p>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8.3></p>	<p>제22조(매각대금의 관리와 사용)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이란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상환을 말한다.</p> <p>② 사업시행자(국가 및 토지소유자는 제외한다)가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9조(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p> <p>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p>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고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p> <p>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p> <p>1. 저수지 2. 양수장이나 배수장 3. 취입보</p>	<p>제10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절차)</p> <p>① 영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을 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p>

	<p>4. 관정이나 집수암거 5. 용수로나 배수로 6. 하구둑이나 방조제 7. 농로</p>	<p>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농업기반시설 부지의 지적도 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8.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p> <p>②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서류 중 농업기반시설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p> <p>④ 영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수조 2.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18조(농업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관리)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시설관리계획에 따라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 	<p>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p> <p>2.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p> <p>⑥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일상점검·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⑧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난구조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경우 	

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
용하는 행위

[시행일 : 2008.8.4]

제19조(농어촌용수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용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용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세우려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용수계획의 내용)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용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수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26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접하는 용수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촌용수구역이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용수계획의 시행)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용수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0조(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p>	<p>제28조(조례의 제정)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p>제29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 저수용량 100만 톤 이상의 저수지 2.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 3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3. 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개요와 주변 환경
2. 시설물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3. 비상 연락 체계
4. 비상 시 응급행동 요령
5. 주민 대피 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총 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2. 시설물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 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p>	<p>제30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 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p>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제22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오염현황 및 전망
 2.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1조(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① 한국농촌공사를 제외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12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3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농업과학기술원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촌공사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수질관련 검사기관

제13조(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신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3.28></p> <p>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p> <p>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p> <p>1. 목적 외 사용의 사유</p> <p>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p> <p>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p> <p>4. 제32조에 따른 경비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p> <p>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p> <p>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p> <p>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p>	

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그 밖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32조(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톤마다 해당 시설 수해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 제1항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기반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p>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기반시설의 개수와 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p>제15조(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24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하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p> <p>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p> <p>②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집단화된 마을 조성 과 재개발 대상 마을의 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p> <p>③ 정부는 제2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 등을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2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 등을 「도서개발촉진법」 등</p>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 2009.1.1]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7조(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제33조(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변경) 시장

·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과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2.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3.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3.28></p> <p>[시행일 : 2008.6.22]</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28조(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 2의2. 빈집의 정비 <p>[시행일 : 2009.1.1]</p>		

2의3.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2의4. 농어촌 주택의 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시행일 : 2009.1.1]

3.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5.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소득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6. 농어촌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7. 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34조(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28조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등)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의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을 포함한다)</p> <p>2. 제1호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5조(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2.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3. 주요시설 계획 4. 주거환경개선 계획 5. 사업비의 조달계획 6. 사업의 시행예정기간 	<p>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대상지역 2. 법 제2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서 정한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 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시행일 : 2008.6.22]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7. 사업의 시행자
8. 그 밖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한국농촌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
 - 가.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 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자

제36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①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 마을정비구역은 마을정비구역별로 사업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고시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지정승인을 받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정비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위치와 면적 3. 지정 연월일 4. 사업개요 5. 사업의 시행예정기간 <p>제3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등을 할 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의 변경 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증감 	

3. 그 밖에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제3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2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3. 농어촌 마을 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계획 및 주택 등 건축계획 		

<p>3의2. 빈집의 정비 [시행일 : 2009.1.1]</p>		
<p>3의3.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p>		
<p>3의4. 농어촌 주택의 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시행일 : 2009.1.1]</p>		
<p>4. 편익시설·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p>		
<p>5. 주차장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p>		
<p>6.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 관광휴양 지원시설의 정비</p>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업시행 절차를 따른다.</p>	<p>제38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의 부존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3조(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p>	<p>제39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개요 2.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 4. 사업비의 명세 5. 사업효과 6. 세부설계도서 7.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p>②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정비시행계획에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축계획 2. 경관에 관한 계획 3. 마을공동체 형성에 관한 계획 4.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명세서 <p>제40조(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4조(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시·도지사가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려

이란 법 제32조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1조(마을정비구역 고시내용의 통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4조 후단에 따라 고시내용을 알릴 때에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정비구역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2. 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면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거나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협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로 본다. <개정2008.2.29></p> <p>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촌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 주체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조 		

와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37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두엄간(堆肥舍), 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농지로의 전환, 주위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거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철거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3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換地)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2조(철거 및 이전비용의 보상) 법 제3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전비나 철거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계획서의 공고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의 자격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가격 5. 분양 또는 임대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p>	

성 용지만 따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⑤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면·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용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p>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p> <p>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3.3></p>

제39조(기술지원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

제4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43조에 따라 시설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제45조(수익금의 관리와 재투자) ①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설계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이 만들어지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그 지침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4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기획기술지원단을 두되,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지원을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개발의 방향 정립 2. 생활환경정비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3.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 <p>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p>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p> <p>제40조(환지계획) ①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p> <p>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p> <p>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p> <p>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p> <p>제47조(미등기 토지에 대한 환지)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다.</p>	<p>제18조(환지계획) ① 법 제40조 제4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기반등 정비 확정도 (축척 1천분의 1) 10. 농업기반등 정비 종전도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증서 사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본과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양여와 무상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p> <p>12. 사업시행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p> <p>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40조 제5항 단서와 법 제49조제5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조서(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조서(법 제49조제6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⑤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폭이 100분의 20 이내

제48조(환지면적의 산정) ① 법 제40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법적 지목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 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조서(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4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교부, 공탁,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9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 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에게 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 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p> <p>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p>	<p>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인가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그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p> <p>②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p> <p>제49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금전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p>	<p>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실경작지 확인) ① 영 제49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동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⑧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②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환지계획의 공고·고시)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50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이하 “환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고,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신청서 2. 해당 토지의 환지계획서 또는 일시 이용지의 지정계획서 3. 해당 토지의 환지지정 신·구대조도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p>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p>	<p>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p>

⑤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3조(환지계획 인가통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면 지체 없이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와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⑦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의 단순한 기재 착오 및 누락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p>⑧ 인가권자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p> <p>제42조(환지 업무의 대행)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p>		<p>② 법 제4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 총계표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 일람표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서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종전 토지원부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 토지원부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한국농촌공사

2. 10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환지사의 자격) ① 제42조제2항의 환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고 환지사 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환지사 시험)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과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20일 전까지 시험 일시·장소,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환지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2조(수수료)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53조(자격증의 발급)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내어주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8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52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p> <p>제25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 결정은 시험 종류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별 40점 이상 전시험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8.3.3></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영</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자가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53조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내주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p>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실경위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환지사자격증(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p>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44조(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지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7.8.3>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삭제 <2007.8.3> 4.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제45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2.29></p>		<p>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제4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42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지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정관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44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p>제27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사항변경 등) ① 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p>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③ 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p>

제4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

증을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8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제2**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p> <p>제48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29조(권리변동의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p>

제49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제54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 ① 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p>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p> <p>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 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p>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주택단지 2. 농민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면·동사무소 및 리사무소 	<p>제30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의 지정목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적에 적합한 단체

3. 한국농촌공사

4. 그 밖에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취득) ① 법 제49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개정 2008.2.29></p> <p>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취득은 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결을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제32조(창설환지의 관리·처분)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창설환지는 환지계획인가일부터 10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계획으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3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⑥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40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제49조에 따른 환지 지정</p> <p>2.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때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4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35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 <p>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p>

제51조(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2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49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51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

(동의)서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⑤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p> <p>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55조(청산금의 공탁)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p> <p>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p>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전 토지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p>		<p>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 지정 내용을 알릴 때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p>

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⑥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토지 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

제56조(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시·도시자가 결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8.2.29>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사하여 결정한다.</p> <p>제55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 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p> <p>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p> <p>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① 법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와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자격이 있는 수혜자(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가하는 수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p> <p>② 총회와 대의원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 중에서 호선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총회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대의원회는 리·동별로 수혜자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p> <p>제58조(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①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회의 회장, 대</p>	

위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면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목적 및 장소를 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시설 부지를 창설환지로 지정받으려면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총회의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 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영 제58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을 작성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요구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56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59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6조에 따라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기관의 해당 사업담당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환지 담당공무원 2.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관계 공무원 	<p>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3. 제57조에 따른 총회의 회장과 총회의 회장이 지명한 수혜자 2명(제57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명)

4.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대행법인의 환지 담당부서장

5. 해당 사업지구의 공사감독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0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7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p> <p>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p>	<p>2. 법 제53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 지정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p> <p>② 위원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그 밖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개정 2008.2.29></p> <p>제61조(리·동 경계선의 변경)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리 또는 동에 걸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리 또는 동 경계선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8조(리·동 경계선의 변경) 영제61조에 따라 리·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리·동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p>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교환·분합의 시행)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62조(교환·분합의 결정방법) ① 법 제58조와 법 제5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이하 “교환·분합의 시행자”라 한다)가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성, 수리,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조서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9조(교환·분합의 인가신청)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교환·분합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분합인가(시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분 합계획 동의서 3. 교환·분합계획도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 분합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 (둘 이상의 시·군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분합 토지평정 가격표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분 합계획 일람표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분 합계획 총계표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분 합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제40조(교환·분합인가) 법 제 58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의 교환·분합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① 제58조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제41조(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인가서 사본에 제39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9조제2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p> <p>③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의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교환·분합의 효과) 제58조제2항에 따</p>	<p>② 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교환·분합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p>	<p>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p>

른 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
합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
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제61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
합)**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
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을 할 때에는 제59
조와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2조(교환·분합의 청산금 등)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에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8조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분
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조(지료 등의 감액과 반환 또는 증액 청
구)**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
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p> <p>제64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借主)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기반</p>		

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65조(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해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6조(지료 등의 청구기한) 환지계획 또는

제6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교환·분합계획을 인가한 것을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65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 또는 반환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지료 등의 증액 청구, 지역권의 효력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p> <p>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p> <p>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p> <p>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p>	<p>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p> <p>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p>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자원 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②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8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 시장·군수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또는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시·군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제사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칭의 변경

제4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4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대상지역)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대상지역은 관광객 유치에 쉽고 교통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및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
2. 토산품 및 민예품 등 지역특산물 생산과 판매가 쉬운 지역
3. 그 밖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그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p> <p>제65조(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68조제2항 전단과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5.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7.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p>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p>

<p>③ 시장·군수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p> <p>② 법 제68조제2항 후단과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의 변경 <p>제66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 3. 사업기간 4. 지정, 해제, 승인 및 취소 연월일 5. 사업개요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p> <p>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70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p>6. 사업비</p> <p>제67조(농림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69조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4.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제71조(선수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68조(선수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법 제71조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등) ① 법 제7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가. 작목별 · 시설별 이용계획 나. 생산품 판매계획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p> <p>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별지 제68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③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일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3조제2항 전단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8.2.29></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p> <p>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p>

		<p>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p>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74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①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은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관광농원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만 양수(讓受)할 수 있다.</p> <p>②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제75조(지도·감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p>

제7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안에 입식작목(入殖作物)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 아닌자와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75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제4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p> <p>제77조(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수산물부장관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78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 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개정 2008.2.29>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p>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79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9조(예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8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종교집회장
2. 아동 관련 시설
3. 업무시설

제49조(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① 시장·군수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p> <p>② 시장·군수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시 연월일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p>③ 시장·군수는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제80조(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과 고시)

- ①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가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 ③ 삭제 <2007.8.3>
- ④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80조제2항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정지구의 명칭
- 2. 지정목적과 정비사업의 종류
- 3. 지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
- 4. 지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5. 지정지구의 정비기간과 정비사업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 6. 사업시행효과(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 1. 제3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81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80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제82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p>	<p>곱미터 이하인 지역. 다만,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한다.</p> <p>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p> <p>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p>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p>	<p>제50조(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p>

(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3조(관련 규정의 준용) ① 제78조제3호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중에서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제78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72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의 종류
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8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2조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으로 환지, 교환·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제40조부터 제66조까지)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p> <p>제84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라 준공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p>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8.3></p> <p>제85조(투자과 선수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p> <p>②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p>		

제86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촌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87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촌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7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촌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시행일 : 2008.6.22]</p> <p>제8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는 관할 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73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융자금의 소요내용 	

제89조(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9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3. 지정승인한 농공단지와 같은 시·군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 실태

제7장 보 칙

제74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소요액 4. 사업예정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경우: 관보 게재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재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제91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8.3, 2007.12.27, 2008.2.29>

2. 공고

사업시행지역의 시·도청, 시·군 또는 구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제75조(주민의견 청취 생략)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
2.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3. 해당 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非管理廳)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폐천부지(廢川敷地) 등의 양여(讓與)</p>		
<p>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시행일 : 2008.4.7]</p>		
<p>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시행일 : 2008.6.28]</p>		
<p>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p>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시행일 : 2008.6.28]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p> <p>② 제7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p>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p> <p>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p>	<p>제76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시 신고가 의제되는 영업) ①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营业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트장업 2. 조정장업 3. 카누장업 4. 빙상장업 5. 승마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7. 수영장업 8. 체육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0. 체력단련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3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6>

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시행일 : 2008.4.7]

3. 「도로법」 제43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11. 당구장업

12. 썰매장업

②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제과점영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94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p> <p>제9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7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중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시 2.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 외의 농업기
 반정비사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수혜
 면적이 50만제곱미터(경지 정리사업의 경
 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3. 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설계 실시 및 농
 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4. 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시
 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농업기반정비
 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승인(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처
 분 승인. 다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
 한다.
6.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와 변경허가
7.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실시
2.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제52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영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법 제2조제5호라
 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시
 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
 혜면적의 증감
2.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6조(토지 등의 수용) ①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p>	<p>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되, 경지 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④ 한국농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p> <p>3.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p>

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인정하거나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⑦ 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p> <p>제97조(마을 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 ① 제10조·제12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나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지역,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제68조, 제80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토석(土石)·사력(沙礫: 모래와 자갈)의 채취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5.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 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6. 묘지·화장장·봉안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7. 비석·기념탑·제사용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② 마을정비구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9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溉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으려면 공사 완료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78호서식의 국공유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p>	<p>②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무상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완료 후 국공유지 갈음 토지 증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p>	<p>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규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지적도 등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 갈음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0호서식의 국공유지</p>

<p>③ 정비사업 지역의 국공유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같은토지 증여지조서</p> <p>2. 국공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p> <p>⑥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p> <p>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p>
---	---	---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99조(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p> <p>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79조(준공검사)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명세서 3. 시설물 배치와 시설현황도 4.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시행전후 면적조서 7.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명세서 <p>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p>	<p>의 국공유지 갈음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p> <p><개정 2008.3.3></p>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0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1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촌공사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제80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촌공사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102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p>	<p>제54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p>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삭제 <2007.8.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12조제3항·제15조제2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6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82조제2항·제88조제1항·제92조제3항 또는 제95조제2항에 따른 승인

다. 제29조제3항·제72조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정

3. 사정이 바뀌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고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p> <p>6. 제8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개정 2008.2.29></p> <p>제103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5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2. 제47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p>제81조(허가 취소 등)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위치와 규모 3. 사업의 종류 4.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 5.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 연월일 	<p>제55조(허가취소등의 처분)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3.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취소

4. 제102조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
정의 취소

제104조(보고와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
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
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5조(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촌공사의 임원이나 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 고용된 환지사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p>		<p>제56조(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타인토지 등의 출입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06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①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 등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7.8.3>

②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이동의 신청·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 「지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소관청(所管廳)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환지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려는 자의 주소와 성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계획, 교환·분합계획 및 어장교환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및 연안해면에 관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 또는 어장교환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2.29></p> <p>제108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08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21></p> <p>[시행일 : 2008.6.22]</p>		

제109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 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환경 등 소관 농어촌지역 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08.2.29>

제110조(수리계)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7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p> <p>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p>	<p>제82조(수리계의 경비징수 의뢰 등) ① 수리계는 법 제11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 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수리계가 법 제1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p>	<p>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p> <p>1. 수리계의 조직기준</p> <p>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 일 것</p> <p>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p> <p>2.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p> <p>가. 운영경비: 농업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p> <p>나.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p> <p>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p>

제11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8.3>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3. 수리계의 해산기준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 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p> <p>[시행일 : 2008.8.4]</p> <p>②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8.3></p> <p>[시행일 : 2008.8.4]</p> <p>③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p> <p>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p>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6조제2항에 따른 토지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05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과 이의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하천법) <법률 제8338호, 2007.4.6></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대통령령 제20579호, 2008.1.31></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농림부령 제1583호, 2008.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p> <p>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p> <p>⑧부터 ⑭까지 생략</p> <p>제17조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9조제1항제1호의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총저수용량 300만 톤 이상의 저수지: 7년 나. 총저수용량 100만 톤 이상 300만 톤 미만의 저수지: 10년 제29조제1항제2호의 시설: 10년 제29조제1항제3호의 시설: 10년 <p>제3조(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한계농지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을 신청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 칙 <법률 제8351호, 2007.4.1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과 제87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p> <p>제3조(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집단마을</p>	<p>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4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한계농지 정비지구부터 적용한다.</p> <p>제5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67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를 정하여 이미 분배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의 일시 이용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농어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1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의 범위는 제2조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p>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본다.

제5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발사업 및 농지개발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7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1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제정된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이 진행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매립지등의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중이거나 임대절차가 진행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이 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p> <p>제8조(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본다.</p>	<p>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절차가 진행 중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5조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전단·3항·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49조제3항, 제52조 제목·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제5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 조치) 법률 제6596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지정 등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1조(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4항 중

별표 3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뒤 쪽, 별지 제33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뒤 쪽,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뒤 쪽·분실경위서,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 쪽 중 “농림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p>	<p>“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7항, 제25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호·제4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항·제46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제6항, 제50조제3항, 제51조제2항·제3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제6호·제2항제1호, 제56조제2항 단서, 제58조제6항, 제60조제4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p>	<p>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p>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公有水面埋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3항,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제43조제6항, 제49조, 제52조, 제53조제1항,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⑦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p> <p>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p> <p>⑨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p> <p>⑩ 内水面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第1項”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p> <p>⑪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35條第1項</p>		

第5號”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 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農漁村整備法 第34條”를 “「농어촌정비법」 제31조”로 한다.

⑫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0條第1項”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항”으로 한다.</p> <p>⑩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 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p> <p>⑰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p> <p>⑱ 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 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p> <p>⑲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p>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㉒ 沿岸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㉓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㉔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p> <p>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p> <p>㉖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p> <p>㉗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p>		

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㉙ 주한미군기지이전예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㉚ 地方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㉛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p> <p>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p> <p>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p> <p>④ 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③5 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③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92條”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③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③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第56條 내지 第6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p> <p>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p> <p>㉟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8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p> <p>㊱ 韓國土地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제10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p> <p>㊲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p> <p>㊳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제37조제1항제15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66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⑩ 부터 ⑤⑤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8588호, 2007.8.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승인 등 행위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한 신청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부 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8749호, 2007.12.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7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8819호, 2007.12.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p> <p>⑨ 부터 ④3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8820호, 2007.12.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p> <p>⑨ 부터 ③9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부 칙(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본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이 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 본문,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87조, 제88조제2항·제3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3항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1조제5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 제53조제1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78조제4호, 제79조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110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제72조제2항 전단·제3항, 제73조제2항 전단·제3항,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법률 제9008호, 2008.3.28></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바목·자목, 같은 조 제7호의2·제7호의3, 제26조제3항(「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호의2·제2호의4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률의 폐지) 奧地開發促進法을 폐지한다.</p> <p>③(「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p>		

별

표

시행령 관련 : 제1호부터 제3호

시행규칙 관련 : 제1호부터 제6호

【시행령 관련】

[별표1]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 (제48조제2항 관련)

$$\text{권리면적률(\%)} = \frac{\text{나} - (\text{라} + \text{바} + \text{아})}{\text{가} - (\text{다} + \text{마} + \text{사})} \times 100$$

<주>

- “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토지의 총면적
- “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
- “다”: 법 제4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환지불능지
- “라”: 법 제49조에 따른 창설환지
- “마”: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시행 전 기능 교환 토지
- “바”: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시행 후 기능 교환 토지
- “사”: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토지
- “아”: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토지

[별표2]

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 기준표 (제51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시 험 과 목	배 점
필 기 시험	환지처분이론,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부동산등기법」(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을 포함한다), 「지적법」, 「국유재산법」	100점
실 기 시험	환지도서 및 등기촉탁서 작성방법 등 환지실무	100점

<p>[별표3]</p> <p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제3항 관련)</p> <p>1. 일반기준</p> <p>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309 746 1113 1326"> <thead> <tr> <th>위 반 행 위</th> <th>해당 법조문</th> <th>과태료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토지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td> <td>법 제113조 제1항제1호</td> <td>80만원</td> </tr> <tr> <td>나.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td> <td>법 제113조 제1항제2호</td> <td>80만원</td> </tr> <tr> <td>다.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td> <td>법 제113조 제1항제3호</td> <td>80만원</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토지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80만원	나.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80만원	다.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80만원	<table border="1" data-bbox="1137 292 1917 1326"> <thead> <tr> <th>위 반 행 위</th> <th>해당 법조문</th> <th>과태료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라.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td> <td>법 제113조 제1항제3호</td> <td>80만원</td> </tr> <tr> <td>바. 법 제105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td> <td>법 제113조 제1항제4호</td> <td>80만원</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라.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80만원	바. 법 제105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8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토지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80만원																				
나.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80만원																				
다.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8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라.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80만원																				
바. 법 제105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80만원																				

【시행규칙 관련】

[별표1]

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제 목	서 식
계 획 평 면 도 (축척 5만분의 1)	별지 제83호서식
사 업 계 획 개 요	별지 제84호서식
저 수 지 현 황	별지 제85호서식
양 수 장 현 황	별지 제86호서식
취 입 보 현 황	별지 제87호서식
암 반 관 정 및 방 사 상 집 수 정 현 황	별지 제88호서식
상 수 도 시 설 현 황	별지 제89호서식
구 역 내 주 요 하 친 현 황	별지 제90호서식
인 구 현 황	별지 제91호서식
토 지 이 용 현 황	별지 제92호서식
축 산 현 황	별지 제93호서식
공 업 현 황	별지 제94호서식
수 산 현 황	별지 제95호서식
공 공 시 설 현 황	별지 제96호서식
마 을 현 황	별지 제97호서식
용 수 개 발 및 공 급 계 획	별지 제98호서식
사 업 비 수 지 예 산	별지 제99호서식
용 수 개 발 사 업 비	별지 제100호서식
주 민 호 응 도 및 참 여 도	별지 제101호서식

[별표2]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8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3명 이상의 환지사가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2명 이내의 환지사가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년
5.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별표3]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3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 어 촌 관 광 휴 양 단 지 사 업	○ 3만 제곱미터(어촌관련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
관 광 농 원 사 업	○ 10만 제곱미터 미만
농 어 촌 민 박 사 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농 어 촌 관 광 휴 양 단 지 사 업	농림어업전시관(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림수산업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밖의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관 광 농 원 사 업	영농체험시설(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농업용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채원 등 농수산물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영 제7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 어 촌 민 박 사 업	음식물제공시설	○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 어 촌 민 박 사 업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비고 : “기본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4]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처분기준의 1차, 2차, 3차 및 4차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시정명령	지정취소	
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안에 입식작목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지정취소
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라.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승인취소
마.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 아닌자와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바. 법 제75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	사업정지 15일 시정명령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15일	지정취소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사.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지정취소			

[별표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1. 기준요율

구분	대상액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측량	기본조사	2.34	2.19	2.01	1.86	1.72	1.54
설계	세부설계	3.79	3.60	3.30	3.05	2.81	2.53	2.34	2.16
	공사감리	8.25	8.00	7.57	7.14	6.74	6.24	5.83	5.40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	0.95

2. 적용방법

- ① 기본조사,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②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자재대·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③ 기본조사의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 ④ 세부설계의 요율 대상액은 세부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 ⑤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 ⑥ 대상액 증가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 ⑦ 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수질개선사업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별표6]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처분기준의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란 2차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2) 법 제12조제3항·제15조제2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6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82조제2항·제88조제1항·제92조제3항 또는 제95조제2항에 따른 승인 3) 법 제29조제3항·제72조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정	허가취소 승인취소 지정취소		
나. 사정이 바뀌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중지 또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허가등의 취 소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인가취소
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승인취소
마.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승인취소

별 지 서 식

【시행규칙 관련 : 제1호부터 제101호】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년 월 일
○○○ (사업시행자)

1. 사업 목적:
2. 사업 지구명:
3. 위치:
4. 사업시행면적: 구역면적 ha
수해면적 ha
5. 사업개요(예상감보율 포함):
6. 총 사업비: 백만원
 - 국 고: 백만원
 - 지방비: 백만원
7. 사업 기간: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297mm×420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동의서

본인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1. 사업계획개요
 - 사업지구명:
 - 위 치:
 - 사업시행면적:
 - 예상감보율:
 - 총 사업비: 백만원
 - 사업기간: . . . ~
 - 세부설계도서: ○○○사업 시행청 비치
2. 동의권자 권리사항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m ²)	소 유 자	비 고 (소유권외권리자)
읍·면	리·동					

년 월 일

동의자 주소: 동의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법·시행령·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뒤 쪽)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뒤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30 일		매립지등 임차신청안내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청사향	③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④임차희망지	토지소재지 (잠정지번)	지 목	임차 면적 (㎡)	임 차 기 간	㎡당임차료 (원)	임차총액 (원)				
신청자 소유농지 현 황	⑤임차대상 자 격		<input type="checkbox"/> 지역농업인 <input type="checkbox"/> 피해농업인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어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 타						
신청자 소유농지 현 황	⑥임차목적		⑦사용개시 년 월 일								
신청자 소유농지 현 황	⑧토지소재지	⑨지 번	⑩지 목	⑪지적 (㎡)	⑫가격(천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지등의 임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없 음	
210mm×297mm (전산용지 80g/㎡)											
제 출 및 처리기관		사업시행기관(단체)									
작성방법		①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기재합니다. ②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임차기간: 임차기간은 5년 이내로 기재합니다. ⑤임차대상 자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⑥임차목적: 농지, 농업관련부대시설(구체적 용도)로 기재합니다.									
근거법규		o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③ (생략) o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절차 및 방법) ①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촌공사)>									
신 청 서		접 수									
교 부		검 토·확 인									
		결 정									
		임대통지서작성									

매립지등 매입신청안내 (뒤 쪽)		매립지등 매각통지서																		
제출 및 처리기관	사업시행기관(단체)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	①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기재합니다. ②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매입희망지 등급 :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⑤매각대상 자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⑥부담금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기재합니다. ⑦사용목적 : 농지, 농업관련부대시설(구체적 용도)로 기재합니다.	산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③ (생략)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③주소																		
		매각 결정 토지 명세	④잠정지번	⑤지목	⑥예정지적 (㎡)	⑦등급	⑧㎡당 가격(원)	⑨토지 가격(원)	⑩부담금액 (원)											
		부담액	⑪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년 거치 년 상환)																	
			⑫상환기간		년 ~ 년 (년간)															
		⑬계약에 관한 사항																		
⑭사용개시연월일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결정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신 청 인</td> <td style="width: 80%;">처리기관 <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촌공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신 청 서</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접 수</div>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검 토 · 확 인</div>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결 정</div>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매각통지서작성</div>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 부</td> <td></td> </tr> </table>		신 청 인	처리기관 <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촌공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신 청 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접 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검 토 · 확 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결 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매각통지서작성</div>	교 부		시·도, 시·군·구·단체의 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신 청 인	처리기관 <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촌공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신 청 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접 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검 토 · 확 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결 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매각통지서작성</div>																			
교 부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반시설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①기관(단체명)	②주소			
	③구조	④규모	⑤수혜면적	ha	
설치 및 유지관리상황	⑥설치	기관(단체명)			
		소재지			
유지관리상황	⑦유지관리	기관(단체명)			
		소재지			
		10a당 부담액	원	수혜자수	명
		관리비연액	천원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합니다. 등록·변경 기관(단체)의 장 <input type="checkbox"/>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농업기반시설부지의 지적도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8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

○관 리 자:

○관리자주소:

※ 이 등록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기관(단체)명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1. 시설개요							
시설명칭	소재지	착공연도	준공연도	시행기관(단체)			
2. 지수지 제원							
구분	연도	단위					
유역면적		ha					
설계홍수량		m/초					
관개 면적	신규	ha					
	보강	ha					
	향후개발	ha					
	구역외	ha					
홍수면적		ha					
만수면적		ha					
기타부지면적		ha					
총저수량		만톤					
유효저수량		만톤					
단위저수량		ha·m					
제당길이		m					
제당높이		m					
사면기울기		내: 외:					
물너미		높이m					
방수로		길이m					
일류수심		m					
통관		길이m					
취수탑		취수량식					
도수로		조/m					
용수로		조/m					
터널		개소/m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 ²)							

3. 설치비 (단위 : 천원)						
자원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용자	자부담 등	계	
지출내용	순공사비	자재비	용지 매수비	설계 공감비	관리비 기타	계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연도별	재원별					지출내용				공사 내용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용자	자부담 기타	계	순 공사비	자재비	관리비 기타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5. 시설부지							
구분	국유지	지방자치 단체소유	한국농촌 공사소유	수리계의 소유	개인 등 기타소유	합계	
필지수	저수지						
	용배수로등						
면적(m ²)	저수지						
	용배수로등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 ²)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20px;"> <p>위 치 도</p> <p>(1/50,000)</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p> </div>	<p>[별지 제9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등록번호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p>농업기반시설(양수장·배수장) 등록부</p> <p style="text-align: center;">. . .</p> </div> <p>○관 리 자:</p> <p>○관리자주소:</p> <p>※ 이 등록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p>기관(단체)명:</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p> </div>
--	---

1. 시설개요

시설명칭	소재지	착공연도	준공연도	시행기관(단체)

2. 양·배수장 제원

구분	연도	단위							
수 계 명									
유역면적		ha							
관 개 면 적	신규	ha							
	보강	ha							
	향후개발	ha							
	구역외	ha							
홍수량		m ³ /초							
갈수량		m ³ /초							
양·배수량		m ³ /초							
실양정		m							
전양정		m							
엔진		HP대							
펌프		mm대							
변압기		KVA대							
배전선로		m							
기중장비		T/대							
도수로		조/m							
승수로		조/m							
용수로		조/m							
배수로		조/m							
터널		조/m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3. 설치비

(단위 : 천원)

재원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 등		계	
지출내용	순공사비	자재비	용지 매수비	설계 공감비	관리비 기타	계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연도별	재원별					지출내용				공사 내용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용자	자부 담기 타	계	순공사 비	자재비	관리비 기타	
~ . .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5. 시설부지

구분		국유지	지방자치 단체소유	한국농촌 공사소유	수리계의 소유	개인 등 기타소유	합계
필지수	지수지						
	용배수로 등						
면적(m ²)	지수지						
	용배수로 등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위 치 도
(1/50,000)

[별지 제10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 . .

농업기반시설(취입보) 등록부

. . .

○관 리 자:

○관리자주소:

※ 이 등록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기관(단체)명: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1. 시설개요

시설명칭	소재지	착공연도	준공연도	시행기관(단체)

2. 제 원

구분	연도	단위				
	유역면적	ha				
홍수량	m ³ /초					
관개면적	신규	ha				
	보강	ha				
	향후개발	ha				
언체	종별	재래보 고정구조물				
	높이	m				
	길이	m				
	넓이	m ²				
	조절문비	련				
취수량	m ³ /초					
용수로	조/m					

3. 설치비

(단위 : 천원)

재원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 등	계
	지출내용	순공사비	자재비	용지매수비	설계공감비	관리비기타	계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연도별	재원별					지출내용				공사내용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기타	계	순공사비	자재비	관리비기타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5. 시설부지

구분	국유지	지방자치단체소유	한국농촌공사소유	수리계의소유	개인등기타소유	합계
	용배수로 등					
면적(m ²)	저수지					
	용배수로 등					

사 진
(12cm×9cm)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11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농업기반시설(집수암거) 등록부

○관 리 자:

○관리자주소:

※ 이 등록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기관(단체)명: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1. 시설개요

시설명칭	소재지	착공연도	준공연도	시행기관(단체)

2. 제 원

구분	연도	단위					
수혜면적		ha					
기준홍수량		m ³ /초					
관개 면적	신규	ha					
	보강	ha					
	향후개발	ha					
관	직경	mm					
	깊이	m					
	길이	m					
양수	엔진	HP대					
	펌프	mm대					
양수량		m ³ /초					
부속건물		동m ²					
용수로		조/m					

3. 설치사업비

(단위 : 천원)

재원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	등	계
지출내용	순공사비	자재비	용지매수비	설계공감비	관리비기타	계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연도별	재원별					지출내용				공사내용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기타	계	순공사비	자재비	관리비기타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5. 시설부지

구분	국유지	지방자치단체소유	한국농촌공사소유	수리계의소유	개인 등기타소유	합계
필지수	저수지					
	용배수로 등					
면적(m ²)	저수지					
	용배수로 등					

사 진
(12cm×9cm)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관 정 카 드

사 진
(12cm×9cm)

일련번호	시설구분	인력() 타설() 기계()	개발연도	년
위치	시도	구시군	동읍면	번지리
수해면적	(ha)		채수량	(m ³ /일)
관직경	(mm)		관정심도	(m)
관리자 이동상황	성명		주소	관리기간
관리구분	보존()		특기사항	
	폐기()			
	양여()			
	타설기재보관()			

※ 작성방법

1. 시설구분과 관리구분은 해당란에 ○표합니다.
2. 특기사항에는 폐기, 양여 및 타설 보관한 일자와 그 사유를 적으시고 양여일 경우는 양수자의 주소, 성명을 써 넣습니다.
3. 관정심도는 지면에서 바닥까지를 말합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 쪽)

점 검 정 비 기 록

구 분	일 자	소 속 성 명	적 요
기 타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점검, 정비, 확인 등으로 구분합니다.
2. 적요란에는 점검일 경우→완전, 요정비, 요폐공 등으로 구분하고, 요정비는 심도, 관체, 뚜껑 등 요보수 내용을 써 넣습니다. 정비 및 확인일 경우→정비사항 및 확인내용을 써 넣습니다.
3. 기타 란에는 타설식 관정일 경우 현재 설치된 위치를 표시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 · ·

농업기반시설(방조제) 등록부
· · ·

○관 리 자:

○관리자주소:

※ 이 등록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기관(단체)명: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1. 시설개요											
시설명칭	소재지	착공연도	준공연도	시행기관(단체)							
2. 제 원											
구분	연도	단 위									
포 용 조 수 량		m ³									
최 대 만 조 위		m									
여 유 고		m									
제 방	상 폭	m									
	하 폭	m									
	높 이	m									
	길 이	m									
배 수 갑 문	구 조	철재, 목재									
	크 기	너비×높이 (m ²)									
	조 작	기계, 수동									
	연 수	런									
수 해 면 적		ha									
3. 설치비 (단위 : 천원)											
제 원 별	국 고 보조		지방비 보조		용 자	자부담 등	계				
지출내용	순공사비		자 재 비	용 지 매수비	설 계 공감비	관 리 비 기타	계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 ²)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연 도 별	제 원 별					지 출 내 용				공사 내용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용 자	자부담 기타	계	순공 사비	자재비	관 리 비 기 타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5. 시설부지											
구 분	국유지	지방자치 단체소유	한국농촌 공사소유	수리계의 소유	개인 등 기타소유	합 계					
필 지 수	저 수 지										
	용배수로 등										
면적(m ²)	저 수 지										
	용배수로 등										

[별지 제14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 . .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관 리 자:

○관리자주소:

※ 이 등록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기관(단체)명:

※ 이 등록부는 농업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방조제를 제외한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양식입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1. 시설개요

시설명칭	소재지	착공연도	준공연도	시행기관(단체)

2. 제 원

구 분	연 도	단 위					

3. 설치비

(단위 : 천원)

재원별	국 고 보 조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부담 등	계
지출내용	순공사비	자 재 비	용 지 매수비	설 계 공감비	관 리 비 기 타	계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농업기반시설 등록증명서

- 시설명칭:
- 소재지:
- 설치기관(단체)명:
- 유지관리기관(단체)명:

위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등록사실을 증명합니다.

시·도지사 인

210mm×297mm
(신문용지(특급) 120g/㎡)

[별지 제17호서식]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재승인) 신청서

사 용 자	법인 또는 기관명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전화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 용 시 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 예정일	
경비부과예정액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지구 환지 총계표														
구분	종전토지					환지					부기			
	지목		등급	필지수	면적	평가	정격	지목	등급	필지수		면적	평가	
	공부	실제												
						m ²	원					m ²	원	
창설환지유상지(법제49조제3항 대상지)														
	계													
창설환지무상지(법제49조제3항 대상지)														
	계													
합계														

구분	종전토지					환지					부기			
	지목		등급	필지수	면적	평가	지목	등급	필지수	면적		평가		
	공부	실제												
						m ²	원					m ²	원	
환지불능지(법 40조제7항 본문대상지)														
	계													
기능교환지(법 제51조 대상지)														
	계													

구 분	종 전 토 지					환 지					부 기	
	지 목		등 급	필 지 수	면 적	평 정 가 격	지 목	등 급	필 지 수	면 적		평 정 가 격
	공 부	실 제										
무상양·증 여지 (법 제88조 대상지)					m ²	원				m ²	원	
	계											
기 타 무상양여지												
	계											

[별지 제20호서식]													
환지계획일람표										지 구		쪽	
연번	토지소유자 성 명	종 전 토 지			환 지			증감 면적	청산금	비 고			
		필지 수	면 적	평 가 정 격	필지 수	면 적	평 가 정 격						
			권 리 면 적	권 리 가 격				초 과 부 족	징수액 교부액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297mm×210mm
(전산용지 80g/m²)

[별지 제21호서식]

환지계획서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종 전 토 지						환 지						소유권의 권리 등의 목적부분			청산금	비고	
리· 동	지번	지목		면적	등급	평정가격	리· 동	지번	지목	면적	등급	평정 가격	종별	범위	부호		징수액
		공부	실제	권리 면적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m ²		원										원	
계																	

297mm×210mm
(전산용지 80g/m²)

[별지 제30호서식]

지구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								
지구		환지						쪽
토지 소유자	종전토지			환지		특별히 감한면적	환지계획서 번호	비고
	필지수	면적	권리 면적	필지수	면적			
		m ²	m ²		m ²	m ²		
합계								

297mm×210mm
(전산용지 80g/m²)

[별지 제31호서식]

지구 증환지 지정 조서								
지구		증환지						쪽
토지 소유자	종전토지			환지		증환지 면적	환지계획 서 번호	비고
	필지 수	면적	권리 면적	필지 수	면적			
		m ²	m ²		m ²	m ²		
합계								

297mm×210mm
(전산용지 80g/m²)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뒤 쪽)									
실경작지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실경작지 명세	토 지 소 개		지 번	공 부 상		실 제		비 고											
	읍·면	리·동		지 목	면 적	지 목	면 적												
					m ²		m ²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귀하																			
경유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동장		년 월 일 시장, 구청장, 읍·면장 [인]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 ²)																			

실경작지 확인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토지소유자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9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금전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자치구·읍·면	

```

                graph TD
                    A[신청서] --> B[접수]
                    B --> C[확인]
                    C --> D[접수]
                    D --> E[확인]
                    E --> F[확인증발급]
                    F --> A
                    subgraph Feedback
                    F -- 교부 --> A
                    end
            
```


[별지 제34호서식]

환 지 계 획 공 고

공 고 제 호

년도 시행한 지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 1. 사업 지구 명:
- 2. 사업 구역:
- 3. 종 전 토 지: 소유자 명, 면적 m²
- 4. 환 지: 소유자 명, 면적 m²
- 5. 환 지 청 산 금: 원
- 6. 공 고 기 간: . . ~ . . (14일간)
- 7. 환 지 내 용: 에 준비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297mm×420mm
(전산용지 80g/m²)

[별지 제35호서식]

환 지 계 획 고 시

○○○ 고시 제 호

○○ 년도 시행한 ○○지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도지사 인

- 1. 사업 지구 명:
- 2. 사업 구역:
- 3. 종 전 토 지: 소유자 명, 면적 m²
- 4. 환 지: 소유자 명, 면적 m²
- 5. 환 지 청 산 금: 원
- 6. 환 지 내 용: ○○○사업 시행청에 준비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p>[별지 제36호서식] (앞 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환지계획 인가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25%;">1. 사업지구명</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지구</td> </tr> <tr> <td>2.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및연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승인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d colspan="2"></td> </tr> <tr> <td>3. 준공연월일</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4. 준공면적</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ha]</td> </tr> <tr> <td>5. 종전토지총면적</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필지]</td> </tr> <tr> <td>6. 환지토지총면적</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필지]</td> </tr> <tr> <td>7. 종전토지소유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명</td> </tr> <tr> <td>8. 환지교부받은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명</td> </tr> <tr> <td>9. 환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width: 5%;"></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격증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호</td> </tr> <tr> <td>10. 구비서류</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뒤쪽 참조</td> </tr> <tr> <td colspan="6" style="padding: 10px;"> <p>「농어촌정비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그 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사업시행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구비서류 : 뒤 쪽 참조</p>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297mm×210mm (전산용지 80g/m²)</p>	환지계획 인가신청서						1. 사업지구명	지구					2.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및연월일	승인번호	호	[년 월 일]			3. 준공연월일	년 월 일					4. 준공면적	㎡ [ha]					5. 종전토지총면적	㎡ [필지]					6. 환지토지총면적	㎡ [필지]					7. 종전토지소유자	총	명				8. 환지교부받은자	총	명				9. 환지사	성명		인	자격증번호	제호	10. 구비서류	뒤쪽 참조					<p>「농어촌정비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그 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사업시행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구비서류 : 뒤 쪽 참조</p>						<p style="text-align: right;">(뒤 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비서류 목록</th> </tr>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20%;">제목</th> <th style="width: 5%;">부수</th>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20%;">제목</th> <th style="width: 5%;">부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환지총계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환지계획 동의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환지계획일람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확정도(1천분의 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환지계획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종전도(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평정가격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사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실경작지조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국공유지 무상증여증서 사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종전토지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d>행정구역 변경조서와 도면(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환지토지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비서류 목록						구분	제목	부수	구분	제목	부수	1	환지총계표	1	8	환지계획 동의서	1	2	환지계획일람표	1	9	확정도(1천분의 1)	1	3	환지계획서	1	10	종전도(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	4	평정가격표	1	11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사본	1	5	실경작지조서	1	12	국공유지 무상증여증서 사본	1	6	종전토지원부	1	13	행정구역 변경조서와 도면(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	7	환지토지원부	1			
환지계획 인가신청서																																																																																																																															
1. 사업지구명	지구																																																																																																																														
2.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및연월일	승인번호	호	[년 월 일]																																																																																																																												
3. 준공연월일	년 월 일																																																																																																																														
4. 준공면적	㎡ [ha]																																																																																																																														
5. 종전토지총면적	㎡ [필지]																																																																																																																														
6. 환지토지총면적	㎡ [필지]																																																																																																																														
7. 종전토지소유자	총	명																																																																																																																													
8. 환지교부받은자	총	명																																																																																																																													
9. 환지사	성명		인	자격증번호	제호																																																																																																																										
10. 구비서류	뒤쪽 참조																																																																																																																														
<p>「농어촌정비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그 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사업시행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구비서류 : 뒤 쪽 참조</p>																																																																																																																															
구비서류 목록																																																																																																																															
구분	제목	부수	구분	제목	부수																																																																																																																										
1	환지총계표	1	8	환지계획 동의서	1																																																																																																																										
2	환지계획일람표	1	9	확정도(1천분의 1)	1																																																																																																																										
3	환지계획서	1	10	종전도(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																																																																																																																										
4	평정가격표	1	11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사본	1																																																																																																																										
5	실경작지조서	1	12	국공유지 무상증여증서 사본	1																																																																																																																										
6	종전토지원부	1	13	행정구역 변경조서와 도면(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																																																																																																																										
7	환지토지원부	1																																																																																																																													

(뒤 쪽) 이 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3%;">신 청 인</th> <th style="width: 33%;">경 유 기 관</th> <th style="width: 33%;">처 리 기 관</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응시원서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 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 수</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확 인</td> <td style="width: 50%;">첨부서류 수수료</td> </tr> </table>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발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응시원서발급</td> </tr> </table>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응시원서작성	제 출	접 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확 인</td> <td style="width: 50%;">첨부서류 수수료</td> </tr> </table>	확 인	첨부서류 수수료		발 급	응시원서발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등록번호 <hr/> </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사진 (2.5cm×3.0cm)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환 지 사 자 격 증 </td> </tr> <tr> <td colspan="2"> 성 명 : _____ </td> </tr> <tr> <td colspan="2"> 주민등록번호 : _____ </td> </tr> <tr> <td colspan="2"> 위의 사람은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에 따른 환지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 니다.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td> </tr> </table>	등록번호 <hr/>	사진 (2.5cm×3.0cm)	환 지 사 자 격 증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위의 사람은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에 따른 환지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응시원서작성	제 출	접 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확 인</td> <td style="width: 50%;">첨부서류 수수료</td> </tr> </table>	확 인	첨부서류 수수료																							
확 인	첨부서류 수수료																										
	발 급	응시원서발급																									
등록번호 <hr/>	사진 (2.5cm×3.0cm)																										
환 지 사 자 격 증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위의 사람은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에 따른 환지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 험시작 1시간 전까지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학생 증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 펜 또는 검은색 수성 사인 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4. 실기시험장에는 답안작성에 필요한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용구(만년 필 또는 볼펜) 및 계산에 필요한 휴대용 계산기와 자를 지참하여야 합니 다.																											
5. 시험당일은 매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응시자는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1. 본증 소지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5조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관한 토지를 관 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구·군· 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																											
3. 본증을 분실하거나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 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5조제 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신청 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0mm×90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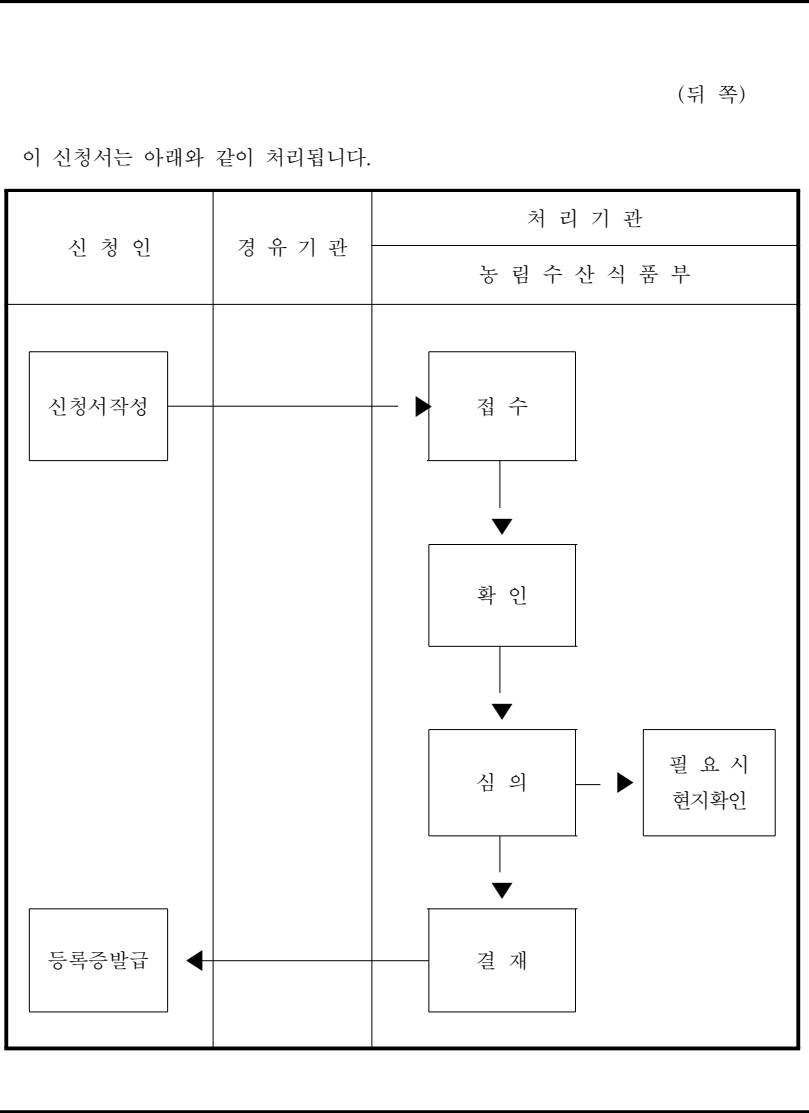
(뒤 쪽)

(뒤 쪽)	
환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농림수산물부시설관리과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5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③ (생략)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수입인지 불이는 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line-height: 40px;">신청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line-height: 40px;">접수</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line-height: 40px;">확인</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line-height: 40px;">결재</div>
↑	
발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년</p> <p>월</p> <p>일</p> <p>신고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명 또는 인)</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림수산물부장관 귀하</p>	
<small>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small>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환지업무대행법인 <input type="checkbox"/> 등록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신청 (변경) 내용	④법인명칭			
	⑤주사무소 소재지			
시설 및 장비내용	명칭	수량	명칭	수량
	사무실	m ²	사무실	
「농어촌정비법」 제46조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니 등록(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 관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안내 (뒤 쪽)	
창설환지 취득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동의 서						처리기간	
						120 일	
리·동	지번(위치)	지 목	면 적	m ² 당단가	금 액	사용용도	
			m ²	원	원		
신 청 (동의)인	상호또는명칭		(전화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특정용도의 창설환지를 취득할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동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 ²)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토지소유자
근 거 법 규	○ 「농어촌정비법」 제49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이 신청(동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동의)인	처 리 기 관
신청서 ↓	제출 → 접수 ↓ 검토 ↓ 확정 ↓ 환지계획반영
↑	통 보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환지 부지정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동의	서	처리기간
							120 일
토 지 명 세	종 전 토 지			신 청 사 항			비 고
	리·동	지 번	지 목	환지부지정 또는 특별히 줄이는 면적			
				m ²			
	계						
토 지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p>「농어촌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지를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면적을 특별히 줄여서 지정받을 것을 신청(동의)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동의자) (서명 또는 인)</p> <p>(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p>					<p>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권자</p> <p>위의 신청(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년 월 일</p> <p>성 명 (서명 또는 인)</p> <p>(대표자)</p> <p>주 소:</p>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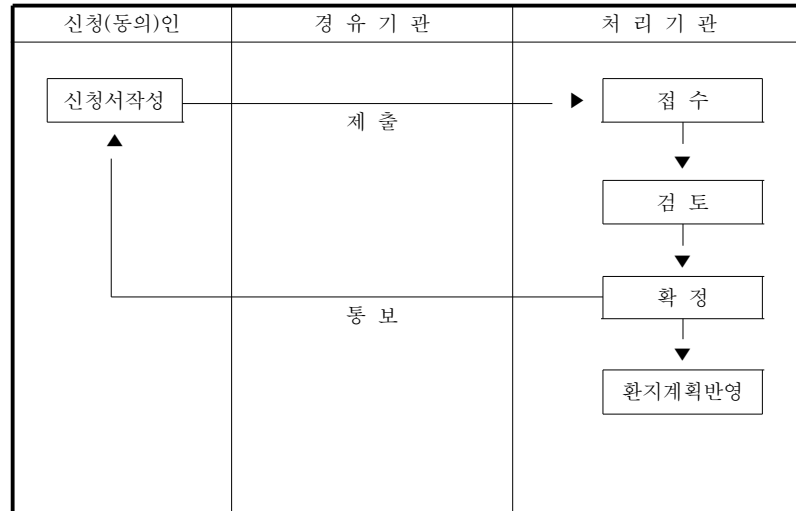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환지부지정 신청(동의) 안내

(뒤 쪽)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토지소유자
근거법규	<p>○ 「농어촌정비법」 제50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p> <p>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40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안내 (뒤 쪽)			
증환지 지정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동의 서				처리기간 120 일			
토 지 명 세	총 전 토 지			증 환 지 회 망 면 적	비 고		
	리·동	지 번	지 목			면 적	
				m ²	m ²		
	계						
토 지 소유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			
「농어촌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환지지정을 신청(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 또는 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 ²)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토지소유자	근 거 법 규 ○ 「농어촌정비법」 제50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환지지정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때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4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동의)인	처 리 기 관
신청서	접수
	검토
	확정
	환지계획반영
통 보	

[별지 제49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총계표									
지구									
구 분	종 전 토 지				일 시 이 용 지			부 기	
	지 목		등 급	필 지 수	면 적	지 목	필 지 수		면 적
	공 부	실 제							
총 계					m ²			m ²	
환 지 교 부 대 상 지 (법 제40조제2항 대상지)								① 종 전 토 지 소 유 자 총 명	
								② 일 시 이 용 지 교 부 받 은 자 총 명	
								③ 권 리 면 적 률 %	
								④ 권 리 면 적 산 출 기 초	
								㉞ 환 지 지 정 대 상 종 전 토 지 총 면 적 m ²	
								㉟ 일 시 이 용 지 지 정 토 지 총 면 적 m ²	
		계							

297mm×840mm
(전산용지 80g/m²)

구 분	종 전 토 지				일 시 이 용 지			부 기	
	지 목		등 급	필 지 수	면 적	지 목	필 지 수		면 적
	공 부	실 제							
창 설 환 지 유 상 지 (법 제49조제3항 대상지)					m ²			m ²	
		계							
창 설 환 지 무 상 지 (법 제49조제3항 대상지)									
		계							

구분	종전토지				일시이용지			부기	
	지목		등급	필지수	면적	지목	필지수		면적
	공부	실제							
환지불능지 (법 제40조제7항 대상지)					m ²			m ²	
	계								
기능교환지 (법 제51조대상지)									
	계								
무상양· 증여지 (법 제98조 대상지)									
					m ²			m ²	
	계								
기타 무상양여지									
	계								

[별지 제54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										연 번								
①사업지구명		○○지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②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③사용·수익개시일		. 부터		④사용·수익 마감일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환 지계획인가 고시일까지												
⑤지정효과		위 사용기간·수익기간 중에는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같은 조건으 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																
⑥지정도열람장소																		
⑦일시 이용지 지정조서																		
종 전 토 지					권 리		일 시 이 용 지				증 감 면 적		비 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		증	감	
읍면	리동					m ²	m ²					m ²		m ²				
「농어촌정비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이용지 지정사항을 알립니다. 다만, 일시이용지는 환지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												인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5호서식]

리·동 경 계 선 변 경 신 청 서	
사업지구명	
소재지	
사업종목	
사업시행확정승인 번호 및 연월일	승인번호 년 월 일
사업시행자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결과 리(동)경계 변경의 필요가 있기에 경계변 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행정구역 변경조서 1부 2. 행정구역 변경지번별 조서 1부 3. 행정구역 변경도 1부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64호서식]

교환·분합계획 총계표

지 목	등 급	교환·분합대상종전토지			교환·분합결정토지			비고
		필지수	면적	평정가격	필지수	면적	평정가격	
			m ²	원		m ²	원	○교환·분합대상자 총 명
								○교환·분합필지 총 필
								○교환·분합면적 m ²
								○청산금 교부액 원
								○청산금 징수액 원
								○청산금 징수교부 차액 원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65호서식]

교환·분합계획 대상 토지 일람표
 예정

계획서 번호	소재지		리동	지번	지목	면적	평정 가격	소유자	
	시·군	읍·면						성명	주소
						m ²	원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p>[별지 제66호서식] 교환·분합계획 인가서</p>							
제 호							
신청인	기관명 (성명)						
	소재지 (주소)						
교환·분합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종전토지	필지수	필	결정토지	필지수	필
			면적	m ²		면적	m ²
	이해관계인수	종전토지소유자		명	결정토지소유자		명
청산금액	정수		명	금액		원	
	교부		명	금액		원	
<p>「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을 인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인</p>							
<p>구비서류: 없음</p>							
<p>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p>							

<p>[별지 제67호서식]</p>				(앞 쪽)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 뒤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2종 이하): 10일 업종(2종 이상):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상 호 (명 칭)				
업 종				
주 사업 장소 제 지		(전화 :)		
자 분 금		원		
영 업 개 시 연 월 일				
변 경 사 유				
<p>「농어촌정비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수입증지)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700원을 가산)		
<p>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p>				

(뒤 쪽)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변경) 신청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시 · 군	
구 비 서 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지정의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1부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1부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 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 품위생법」 제27조제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 련 법 규	○ 「농어촌정비법」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별지 제68호서식]

(앞 쪽)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연 월 일	영 업 허 가 연 월 일	개 업 연 월 일
건설에 들어간 자 금	자기자금:	용자:	계:
숙 박 시 설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면적 ㎡	
	연 건축면적 ㎡	객 실 수	한실: 양실: 계:
음 식 점 시 설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면적 ㎡	
	연 건축면적 ㎡	부대시설	
총 용 지 면 적	㎡	총 건 물 연 면 적	㎡, 건물동수 동
주 영 업 종 목		종 업 수	남: 여: 계: 명
시 설 내 역	해수욕장	1. 간이목욕시설 2. 담수욕장 3. 탈의장 4. 휴게시설 5. 구명정 6. 전망대 7. 응급처리설비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 개소 개소
	체육시설	1. 체육시설 2. 오락시설 3. 체육시설 면적 4. 레크레이션시설 5. 휴게시설	종 종 ㎡ 종 종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뒤 쪽)		[별지 제69호서식]	
시 설 내 역	동 물 원	1. 동 물: 종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명칭): 소 재 지: 업 종: 조 건: 「농어촌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시·군·구의 장 인 </div>
		2. 사파리공원의 동물 및 수량: 종 수	
		3. 피크닉장: m ²	
		4. 휴게시설: 종	
	식 물 원	1. 온실면적: m ²	
		2. 식 물: 종	
		3. 휴게시설: 종	
	온 천 장	1. 대중목욕시설(남, 여 구분): m ²	
		2. 실내수영장: m ²	
		3. 레크레이션시설: 종	
	4. 휴게시설: 종		
동 물 자 원	1. 레크레이션시설: 종		
	2. 피크닉장: m ²		
	3. 휴게시설: 종		
수 영 장	1. 수영장 연면적: m ²		
	2. 샤워실, 탈의실: 개소		
	3. 사우나시설: 종		
	4. 휴게시설: 종		
농 어 촌 휴양시설	1.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 m ²		
	2.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종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민박명칭: 소재지: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민 박 소 재 지			민박명칭					
지 정 번 호			지정연월일					
변 경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 ²)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 ²)				